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 보고

1. 조사개요

- (조사기간) 2018. 4. 17. ~ 4. 19.(3일)
- (조사인원/조사방법) □□□, □□□ / 실지조사

2. 조사결과

① 원장 관련

■ 면접심사장에서 부적절한 발언

- 2017년 상반기 직원 채용 시 ◆◆◆ 원장은 면접심사장에서 의도적으로 ❖❖❖(연구직/□□□□분야 연구원 응시자)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여, 면접위원들이 ❖❖❖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도록 유인함

□ 확인결과

- (직원채용) 연구원은 「2017년 상반기 직원 채용계획」을 수립·시행* 하여 최종 합격자 4명을 정규직으로 임용**함

* 채용분야(4명): 연구직2, 통계직1, 행정직1, 채용방법: 서류심사(1차), 필기 시험(2차), 인·적성검사, 면접심사, 인사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됨

** 연구직(부연구위원 □□□, 연구원 □□□), 통계직(□□□), 행정직(☒☒☒)

- (면접심사) 연구직(문화정책) 면접심사장(6.30.)에 면접위원(8명)*과 참관인**으로 원장, 소관부서(문화연구본부) 2명 등 다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최종 1·2순위가 선정***됨

* 내부위원으로 구성, 면접대상자: 7명

** 2015년부터 원장을 포함한 희망직원들의 참관이 가능하며, 추가 또는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함

*** 1순위: □□□(82.68점), 2순위: ❖❖❖(80.47점)

- (특정인 언급) 원장은 면접심사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❖❖❖ 응시자에게 발표주제*와 관련이 없는 질의 및 특정인을 언급하여 심사위원장으로부터 ‘부적절한 발언’이라는 질책성 말을 들은 것으로 확인됨

- 원장은 과거 대학교수 채용 시 유사한 사례와 경험이 있어 “청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전하고자 했으며, 면접 위원들에게도 혹시 청탁을 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원하는 취지였다” 고 진술
- (심사평가) 면접위원(8명)은 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느꼈으나,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소신 있게 심사하였다고 진술함

☞ 원장이 면접심사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특정인(응시자 □□□, □□□ 교수)을 언급한 것은 청탁방지를 위한 우회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나, 발표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참관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됨

■ 비위의혹(2016년 하반기/면접결과 조작)

- 2016년 하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◆◆◆ 원장은 정책평가분야 1위를 차지한 ❖❖❖을 특별한 사유 명시 없이 탈락시키고, 다른 모집분야인 관광정책분야에서 2위를 한 응시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

□ 확인결과

- 정책평가분야 적격자가 없다는 사유로, 타 분야인 관광정책분야의 당초 채용 계획인원(1명)에 1명을 추가하여 총2명을 선발함

※ □□□ 의원실 의혹 제기에 따른 문체부 특별조사('17.8.30.~8.31.) 결과, 인사 규정 제9조(채용방법) 위반*에 따른 '기관주의' 조치(9.27.)

② □□□□본부장 관련

■ 비위의혹

- 2017년 상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○○○ □□□□본부장은 행정직 최종 면접심사 시 특정인(☒☒☒)을 선발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회유한 의혹이 있음
- □□□□본부장의 지각 등 복무가 부적정함

□ 확인결과

- (심사과정) 일반행정분야 행정원 최종 면접심사*(5.23.)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인 □□□□본부장은 면접심사 완료 후 심사 진행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물었고,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 후 개인의 판단에 따라 채점하였음

* 면접대상자: 10명, 면접위원: 7명

- (심사결과) 채점 결과 평균 80점 이상(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)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 후보자를 결정,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1순위였던 ○○○○을 최종 합격 후보자로 의결(5.29.)하였으며, 연구원은 ○○○○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(5.31.) 함

- (임용) 합격자 발표(5.31.) 후 최종 합격자인 ○○○○이 입사를 포기함에 따라 예비후보자 1순위였던 ☒☒☒가 최종 합격하여 임용(6.30.) 됨

☞ 심사위원장이 면접평가 후 우수한 인재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심사위원간 의견 교환은 통상적 심사진행 과정으로 보이며, ○○○○ 본부장이 특정인(☒☒☒)을 선발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회유하였다고 하나, ☒☒☒의 최종순위가 2위임을 감안할 때,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

- (복무) 출퇴근 근무상황부를 점검한 결과, 2016.3.7.~2018.4.18.*까지 09:10분 이후 출근이 총82회('16년 35회, '17년 35회, '18년 12회)로 확인됨

* 근무유형: 09:00출근, 18:00퇴근 / 2016.3.7.이전: 10:00출근, 19:00퇴근

< □□□□본부장 근무상황(출근 지각) 내역 >

구 분	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2016년	35			7	4	-	2	5	1	4	8	4	-
2017년	35	1	-	1	2	2	3	3	3	9	2	6	3
2018년	12	4	2	5	1								
합 계	82	5	2	13	7	2	5	8	4	13	10	10	3

※ 입·출입 카드시스템 기록('16.3.7.~'18.4.18.)을 재구성, 월별 09:10분 이후 출근 횟수임

☞ 연구원 「복무규정」 제12조(근무시간) 및 제13조(출근) 위반

3. 조치계획

- 원장이 면접 대상자의 발표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하여 참관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되어 ‘엄중 주의(구두)’ 조치
- 면접위원장(○○○)의 면접심사 후 위원들 간 의견조율은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 심사진행 과정으로 판단되어 종결처리 하고, 출근 지각(총82회)에 대해서는 연구원 「복무규정」 제12조(근무시간) 및 제13조(출근) 위반으로 ‘주의’ 조치

※ ※※※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「2018년 상반기 직원 채용」 결과, 연구직 (□□□□분야 연구원) 직원으로 최종 합격('18.4.20.) 함
- 2015.7.1.~2017.12.31.(2년 6개월 간) 위촉직(계약직) 연구원으로 근무